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

* 경실련은 올해 두 차례의 선거에서 재확인된 거대양당 독식, 자질 없는 후보 난립, 득권 쟁기기 등 부패하고 후진적인 정치권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득권 양당 체제를 깨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다음의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하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함.

1.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1) 현황 및 문제점

-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권력자이자 주권자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잘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 선관위 등에서는 지역구 대표성과 선거제도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이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나, 지역 기반이 강한 주요 거대 정당들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저항으로 이뤄지지 못했음.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주저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률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켰고,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를 별도로 출마시키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였음.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로 제시된 비례성 제고가 오히려 악화되고, 실질적으로 양대 정당 중심의 정당체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 유권자들은 현재의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성정당은 반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한편, 경실련은 2020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

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7일,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 한 바 있음.

2) 개정 의견

-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 잡고, 위성정당을 출현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함.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례적인 선거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

①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함(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부칙 제14조 개정).

② 비례 위성정당 출현 방지

-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성정당 창당을 통한 득권 유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해야 함(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
-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여야 함.

③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가지고는 연동형 선거제도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드러날 수 없음.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혹은 총의원 정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음. 이에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공직선거법 제21조 개정).

- ※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의석 비율을 2 대 1 수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함.

- 필요하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세비 인하와 같은 재원 마련 방안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관련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개정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제1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것으로,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으로 구성됨. 준연동형 산출식은 ‘(의석 할당 정당 총의석수 × 정당별 득표 비율 - 지역구 당선자 수)/2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함.
비례대표 확대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의석 비율을 2 대 1 수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함.

※ 참고 법안

-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 의원안(의안번호 : 2114624), 강민정 의원안(의안번호 : 2115991) 등 발의되어 있음.

2.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각 공직선거가 있는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인 선거보조금으로 나뉨.
- 매 분기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급함. 먼저 동일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총액의 2%를 지급함.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함.

-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동함.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만큼, 적어도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담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 현재와 같은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고, 정치 시각의 역동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임.
- 한편,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900억 이상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음.

2) 개정 의견

① 전국 기준 득표율(혹은 의석수)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 현행 제도를 대신하여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이 제도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정치자금법 제27조).

② 현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투명화

-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정치자금법 제7장)

3) 관련법(정치자금법) 개정안

	현행	개정
전국 기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동일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총액의 2%를 지급함.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는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의 유효 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투명화(제7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3. 공천 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1) 현황

- 현재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제2항은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원칙으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어 정당의 당헌·당규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다 보니 양대 정당의 공천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음. 현재 양대 정당의 공천을 관리하는 비선출직 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전략 공천, 단수공천, 경선 실시 여부 결정, 비례대표 후보자 검증 및 명부 작성까지 담당하여 그 권한이 비대함.
- 양대 정당은 당헌 당규에 부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 범죄자, 투기꾼 등 부적격자

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하였음.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에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규정 제14조에 추천 대상 배제 기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음.

- 경실련이 지방선거에 앞서 양대 정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함.
- 하지만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전과자 분석 결과 이러한 공천 배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양대 정당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공천 시스템과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예외 조항을 통해 범죄자, 투기꾼 등 자질 없는 인물들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높은 상태임. 국민들은 양대 정당이 불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통해 기득권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들을 선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음.

2) 개선방안

①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엄격한 적용

- 예외 없는 공천 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에서 시도당에 내린 중앙당 공천 배제 기준 및 공천 심사기준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시도당에 별도로 적용된 공천 점수, 기초의원 공천률 등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정당별 당규).

② 공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상향식 공천)

- 단계적인 공천 심사를 거친 후 후보자 최종 결정은 선출직 대의원들로 구성된 정당 기구가 결정(회의록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정당별 당규).

3) 관련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개정
<p>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엄격한 적용 (정당별 당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 6조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 4.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5.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민의힘 규정 제14조 추천 대상 배제 기준 8.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 알선 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단,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 의결한 범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의 예외 조항 삭제 ▪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 지침 엄격 적용

4.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취득 금지(임대업 금지)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공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국회법 제29조의 2에서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그 임기 동안 공익 활동에 충실히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 있음.
- 하지만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취득에 대해서만 영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임대업에 대한 신고 및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경실련이 국회의원이 국회 산하의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체 신고한 임대업 신고(심사)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실상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임대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임대업 전체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허가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신고 및 심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신고 역시 국회의원의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음.

2) 개정 의견

① 국회의원 임기 중 임대행위 금지

- 우선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 영리업무 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함. 국민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하려면 겸직 또는 영리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됨. 영리업무를 금지하면서, 불로소득만 허용하는 것은 모순임. 따라서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원천 금지해야 하며, 배우자도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함(국회법 제29조의2).

②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대사업자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금지

-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함
 - 상임위 배정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사업을 신고하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상임위에 대한 배정이 제척되어야 함.

3) 관련법(국회법) 개정사항

	현행	개정
국회의원 임기 중 임대행위 금지 (제2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삭제

5. 정당 설립요건 완화 (지역정당 설립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에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지역 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또한 지역정당의 부재는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 정당구도에서 호남이나 영남 지역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거대 양당의 독점적 지역 분점 체제로 인하여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지방 단위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 관련 규정은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 함께 정당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본 구 「정당법」을 계승한 것임.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 2표제를 채택한 이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가 급증하여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는 37개에 달하였는 바,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하여 정당의 설립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정당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적 결정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음. 지역민들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당의 이익집약기능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지역 정당을 허용하여 지역민들의 선택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전국단위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원화하여 정당설립 요건을 구분할 경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 한편, 현재에서는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역정당을 배제하는 현행 「정당법」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04헌마246. 2006.3.30.).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도록 한 「정당법」 규정이 지역정당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됨.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음. 또한 지역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우리 정치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았음.
- 하지만 현재 결정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 지역주의는 약화되었으며, 세대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당시 현재는 지역정당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역 정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정당으로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였음. 하지만 지역정당의 배제는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영호남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음. 지역주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역정당은 지역 단위에서 정당 간 경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또한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수도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한지 의문임.

2) 개선방안

① 지역정당 설립 보장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 기반 정당 설립을 보장함(정당법 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 ※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
- ※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축소

- 중앙정치 예측 방지 차원에서도 지역정당 창당 요건 완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정당 활성화하면 다양한 정치세력 자유롭게 출마하여 경쟁하게 되고, 국회의원들 자기 사람 심는 것, 중앙정치 예측도 줄어들 것임.

3) 관련법(정당법) 개정사항

	현행	개정
지역정당 설립보장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
지역정당 설립보장 (제4조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축소

※ 참고 법안

- 현재 민형배 의원안(의안번호 : 2112802)와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2)이 계류 중임.